

작성일자 5/10/2023 (월/일/년)

버전 6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SIGMALINE 855 HARDENER
제품 코드 : 00184962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용도 : 전문적 용도, 사용시 분무.
물질/혼합물의 용도 : 코팅.
권장되지 않는 사용방법 : 본 제품은 소비자 용으로 제작, 표시 또는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공급자 또는 수입자 정보 : PPG SSC (680-090)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217번길 19
이메일 주소 : Korea.MSDS@PPG.COM
긴급전화번호 : +82-52-210-8222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성 독성 (흡입) - 분류 4
피부 자극성 - 분류 2
눈 자극성 - 2A
호흡기 과민성 - 분류 1
피부 과민성 - 분류 1
발암성 - 분류 2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 (호흡기계 자극) - 분류 3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 - 분류 2

이 제품은 산업안전 및 보건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



신호어 : 위험

유해·위험 문구 : H315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2 - 흡입하면 유해함.
H334 -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음.
H335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H351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73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호흡기계)

예방조치 문구

제품명SIGMALINE 855 HARDENER

2. 유해성·위험성

- 예방

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 보호의과 보안경또는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십시오.
P284 -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P260 - 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
P264 - 취급 후에는 완전히 씻으시오.
- 대응

P308 + 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 조언 또는 치료를 받으십시오.
P304 + P340, P312 -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42 + P311 -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62 + 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십시오.
P302 + P352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P333 + 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언이나 치료를 받으십시오.
P305 + P351 + P338 -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시오.
P337 + 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을 구하십시오.
- 저장

P403 + 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십시오.
-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 알려진 바 없음.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Polymethylenepolyphenyl isocyanate

CAS 번호/기타 정보

CAS번호 : 해당 없음.

화학물질명	관용명	식별자	%
Isocyanic acid, polymethylenepolyphenylene ester 4,4'-디이소시아산 디페닐메탄	diphenylmethanediisocyanate, isomeres and homologues	CAS: 9016-87-9	50 - <60
	4,4'-methylenediphenyl diisocyanate	CAS: 101-68-8	30 - <40
	o-(p-isocyanatobenzyl)phenyl isocyanate	CAS: 5873-54-1	10 - <20
	2,2'-methylenediphenyl diisocyanate	CAS: 2536-05-2	1 - <5

공급자의 현재 지식범위 및 적용가능한 농도내에서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분류되어 이 항에 보고되어야 하는
추가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작업장 노출한계의 자료가 있다면 8항에 기술되어 있음.

제품 코드	00184962	작성일자	5/10/2023 (월/일/년)	버전	6
제품명	SIGMALINE 855 HARDENER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콘택트 렌즈의 유무를 확인하여,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거할 것. 즉시 흐르는 물에 눈꺼풀을 벌리면서 15분 이상 세안할 것.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을 것.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거나 적합한 피부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용제나 신너를 사용하지 말 것.
다. 흡입	: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시킬 것. 피해자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시킬 것. 호흡하지 않거나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호흡정지가 일어난 경우, 훈련 받은 사람이 인공호흡 또는 산소 공급을 할 것.
라. 먹었을 때	: 섭취한 경우,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용기 또는 라벨을 보일 것. 피해자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시킬 것. 토하게 하지 마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화재시 분해제품을 흡입하면, 증상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음. 노출된 사람은 48시간 동안 의료진의 감시가 필요함.
특별 취급	: 특정한 치료법은 없음.
응급 처치자의 보호	: 인체에 위험이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말 것. 흠(fumes)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면, 구조대원은 적절한 마스크 또는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을 하면 구조 제공자가 위험할 수 있음. 오염된 옷을 벗기전에 옷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거나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해성 정보를 참조할 것. (11항)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 주변 화재에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할 것.
부적절한 소화제	: 알려진 바 없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화재 및 가열되면, 압력은 증가하며 용기는 폭발할 것 임.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분해산물은 다음과 같은 물질을 포함할 수 있음: 탄소 산화물 질소 산화물 시아네이트 및 이소시아네이트. 시아나화 수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 소방관은 적절한 보호 장비와 전면 정압 공기 공급형 호흡기가 있는 개인호흡기(SCBA)를 착용할 것.
소방 조치	: 화재가 날 경우 즉시 모든 사람을 사고 부근으로부터 퇴거시키고 현장을 격리할 것. 인체에 위험이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말 것.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인체에 위험이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말 것. 주변지역을 벗어날 것. 필요하지 않거나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막을 것. 유출된 물질에 접촉하거나 밟지 말 것. 증기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않도록 할 것. 충분히 환기할 것.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사항 : 유출된 물질이 분산되거나 유수가 토양, 수로, 배수 및 하수와 접촉하는 것을 피할 것. 제품이 환경 오염(하수, 수로, 토양, 공기)을 발생시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할 것.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량 누출** : 위험이 없으면, 누출을 정지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이동할 것. 수용성인 경우 물로 희석시켜 닦아내시오. 비수용성인 경우, 비활성의 건조한 물질로 흡수시켜 적절한 폐기 용기에 담으시오. 인가된 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폐기할 것.
- 대량 누출** : 위험이 없으면, 누출을 정지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이동할 것. 유출물에 접근할 경우에는 풍상(風上)에서 행할 것. 하수, 수로, 지하 또는 밀폐된 장소로 유입시키지 말 것. 유출물을 폐수처리공장으로 보내거나 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할 것. 누출된 물질을 비인화성 흡착 물질, 예를 들면 모래, 흙, 질석, 규조토로 흡착하여 용기에 담은 다음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13항 참조). 인가된 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폐기할 것. 오염 흡수 물질은 누출 제품과 동일하게 유해함. 주: 비상 연락 정보는 1항, 폐기물 처리는 13항을 참조하십시오.
- 특별 조항** : 누출된 물질을 비인화성 흡착 물질, 예를 들면 모래, 흙, 질석, 규조토로 흡착하여 용기에 담은 다음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13항 참조). 적당한 용기에 넣으십시오. 오염된 지역은 즉시 적합한 오염제거제로 씻어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가연성) 오염제거제는 (부피에 따라) 다음 성분들로 이뤄진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45%),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필 알콜(50%), 질은(d:0.880) 암모니아 용액(5%). 비가연성으로 가능한 것으로는 탄산나트륨(5%), 물(95%)이 있습니다. 잔존물에 전술한 오염제거제를 넣은 다음 용기의 뚜껑을 닫지 않고 반응이 없을 때까지 며칠 동안 놔둡니다. 그 다음엔 뚜껑을 닫고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합니다. (13절 참고). 하수도나 배수로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제품이 호수, 강, 하수도를 오염시킬 경우 현지 규정에 따라 해당 관서에 통지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8항 참조). 피부 감작성 문제를 가졌거나 천식, 알레르기, 또는 만성적이거나 재발성 호흡기계 질환 병력을 가진 사람은 이 제품이 사용되는 어떠한 공정에도 종사하여서는 안됨. 노출을 피할 것 - 사용 전에 전문 지시서를 입수할 것.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눈 또는 피부 또는 의복에 닿지 않도록 할 것. 증기나 미스트를 호흡하지 말 것. 섭취하지 말 것.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원래의 용기 또는 혼축 가능한 재질로 만들어진 승인된 대체 용기에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밀폐하여 보관할 것. 빈 용기가 제품 잔류물을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유해할 수 있음. 용기를 재사용하지 말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다음 온도 사이에서 보관할 것: 0 - 35°C (32 - 95°F). 해당 지역 규정에 따라 보관할 것. 건조하고 서늘하며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여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며, 배합금지 물질 (10항을 참조) 과 음식 및 음료로부터 멀리 둘 것.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십시오. 용기는 사용 전까지 밀봉해 둘 것. 개봉한 용기는 주의 깊게 다시 봉한 다음 누출을 방지를 위해 세워 보관할 것. 라벨이 없는 용기에 보관하지 말 것. 적절한 봉쇄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 취급이나 사용 전에 섹션 10의 격리보관 물질을 확인하십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대기의 습기나 수분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O₂ 가 형성되며 밀폐 용기 안에서는 압력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노출기준

성분명	노출기준
4,4'-다이소시아산 디페닐메탄	고용노동부 (한국, 1/2020). TWA: 0.005 ppm 8 시간.

- 권고되는 모니터링 과정 : 적절한 모니터링 기준에 대한 참조를 해야 함. 유해 물질 결정방법에 관한 국가 지침 문서의 참조가 필요함.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공정을 둘러 싸거나 국소 배기설비 또는 기타 공학적 관리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자가 공기 중의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권장 또는 규정된 한도 이하로 유지할 것.
- 환경 노출 관리 : 배기 또는 작업 공정 설비로부터의 배출이 환경 보호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배출물질을 허용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흠 세정기 (fume scrubbers), 필터, 또는 가공 시설에 대한 공학적 개조가 필요할 것임.
-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장별 평가에서 공기 호흡보호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공기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십시오. 이 경우 위험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여 호흡기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적절한 보호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알고 있거나 예상되는 노출량, 제품의 유해성, 선택한 호흡보호구의 안전 작동 한계에 근거하여 호흡보호구를 선택할 것.
- 눈 보호 : 화학물질 튀김 방지용 안경.
- 손 보호 : 위험 평가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면, 화학 제품을 취급할 때, 승인 기준에 부합되는 내화학성, 불침투성 장갑을 언제나 사용할 것. 장갑 제조자가 명시한 변수를 고려하여, 사용중 장갑이 그 보호 특성을 계속 유지하는지 확인할 것. 장갑 물질에 대한 침투 시간이 장갑 제조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함. 여러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장갑의 보호시간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음.
- 장갑 : 부틸 고무
- 신체 보호 : 제품을 취급하기 전에 인체 개인 보호 장비는 실제 작업 성능과 관련된 사고 위험을 기초로 선택하고 전문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 위생상 주의사항 : 이 화학 제품을 취급한 다음 작업 종료 때,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에, 손, 팔, 얼굴을 충분히 씻을 것. 의복에 잠재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오염된 의복은 재작업 전에 세탁할 것. 눈 세척 장소와 안전 샤워 시설이 작업 장소와 가깝도록 확실히 할 것.
- 사용상의 제한 : 천식, 알레르기, 만성 또는 재발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공정에 종사하지 않도록 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모든 성질에 대한 측정 조건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표준 온도 및 압력입니다.

가. 외관

- 물리적 상태 : 액체.
- 색 : 무색.

나. 냄새 : 아민계

다. 냄새 역치 : 자료 없음.

9. 물리화학적 특성

- 라. pH : 해당 없음.
- 마. 녹는점/어는점 : 자료 없음.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37.78℃ (>100°F)
- 사. 인화점 : 밀폐식
: 해당 없음.
- 아. 증발 속도 : 자료 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 자료 없음.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자료 없음.

카. 증기압 :

성분명	20°C에서의 증기압			50°C에서의 증기압		
	mm Hg	kPa	방법	mm Hg	kPa	방법
 2'-methylenediphenyl diisocyanate	0.000061	0.0000081	OECD 104			

타. 용해도 :

매체	결과
 수	용해되지 않음

- 수용해도 : 자료 없음.
- 파. 증기밀도 : 자료 없음.
- 하. 비중 : 1.23
-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해당 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

성분명	℃	°F	방법
 4'-디이소시아산 디페닐메탄	>601	>1113.8	EU A.15

- 다. 분해 온도 : 자료 없음.
- 러. 점도 :  점도 (40℃ (104°F)): >21 mm²/s (>21 cSt)
- 머. 흐름 시간(ISO 2431) : 자료 없음.
- 분자량 : 해당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 제품은 안정함.
-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일반적인 보관 및 사용 조건에서, 위험한 반응은 일어나지 않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 화재시, 유해한 분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

- 다. 피해야 할 물질 : 다음으로부터 멀리 둘 것: 산화제, 강알칼리, 강산, 아민, 알콜, 물. 아민, 알코올과 쉽게 발열 반응을 일으킴.

10. 안정성 및 반응성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조건에 따라, 분해 생성물에는 다음과 같은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아네이트 및 이소시아네이트, 탄소 산화물 질소 산화물 시안화 수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잠재적 급성 건강 영향

- 흡입 : 흡입하면 유해함.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먹었을 때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눈에 들어갔을 때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과다 노출 징후/증상

- 흡입 : 이상 증상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음:
호흡기 자극
기침
숨을 헐떡거리고 호흡곤란
천식
- 먹었을 때 :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이상 증상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음:
자극
홍조
- 눈에 들어갔을 때 : 이상 증상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음:
통증 또는 자극
눈물이 나옴
홍조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 독성

제품/성분명	결과	생물종	투여량	노출
Isocyanic acid, polymethylenepolyphenylene ester	LD50 경피	토끼	>9400 mg/kg	—
4,4'-디이소시아산 디페닐메탄	LD50 경구	쥐	49 g/kg	—
	LD50 경구	쥐	9200 mg/kg	—

결론/요약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자극성/부식성

제품/성분명	결과	생물종	시험 결과	노출	관찰
4,4'-디이소시아산 디페닐메탄	피부 - 자극성물질	토끼	—	—	—

- 결론/요약
- 피부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 눈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 호흡기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과민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제품/성분명	노출 경로	생물종	결과
4,4'-디이소시아산 디페닐메탄	호흡기	기니 피그	과민성물질
	피부	마우스	과민성물질

결론/요약

피부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호흡기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변이원성

결론/요약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발암성

제품/성분명	결과	생물종	투여량	노출
4,4'-디이소시아산 디페닐메탄	양성 - 흡입 - TC	쥐	0 - 6 mg/m³	2 년(年); 5 주당 일

결론/요약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생식독성

결론/요약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최기형성

결론/요약
: 혼합물 자체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이름	분류	노출 경로	표적 기관
Isocyanic acid, polymethylenepolyphenylene ester	분류 3	-	호흡기계 자극
4,4'-디이소시아산 디페닐메탄	분류 3	-	호흡기계 자극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산	분류 3	-	호흡기계 자극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산	분류 3	-	호흡기계 자극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이름	분류	노출 경로	표적 기관
Isocyanic acid, polymethylenepolyphenylene ester	분류 2	흡입	-
4,4'-디이소시아산 디페닐메탄	분류 2	흡입	호흡기계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산	분류 2	-	-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산	분류 2	-	-

흡인 유해성

자료 없음.

만성 징후와 증상

일반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한번 항원에 민감해지면 나중에 매우 소량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심각한 알려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

발암성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암의 위험성은 노출 기간과 수준에 달려 있음.

변이원성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생식독성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제품명SIGMALINE 855 HARDENER

11. 독성에 관한 정보

추가 정보

이소시아네이트 구성물의 특성과 유사 혼합물에 대한 독성 자료에 근거할 때, 본 혼합물은 호흡기계의 급성 자극 및/또는 과민성을 일으켜, 천식 조건, 천명 및 가슴압박을 초래할 수 있음. 민감화된 사람은 그 이후로도 작업장 노출 한계 이하의 대기 밀도에 노출되어도 천식 증상을 보일 수 있음. 피부 감작성 문제를 가졌거나 천식, 알레르기, 또는 만성적이거나 재발성 호흡기계 질환 병력을 가진 사람은 이 제품이 사용되는 어떠한 공정에도 종사하여서는 안됨.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영구적 호흡장애가 올 수 있음. 습기과민성 물질.

화학물질명	식별자	GHS 분류
Isocyanic acid, polymethylenepolyphenylene ester	CAS: 9016-87-9	급성 독성 (흡입) - 분류 4 피부 자극성 - 분류 2 눈 자극성 - 2A 호흡기 과민성 - 분류 1A 피부 과민성 - 분류 1A 발암성 - 분류 2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 (호흡기계 자극) - 분류 3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 - 분류 2
4,4'-디이소시아산 디페닐메탄	CAS: 101-68-8	급성 독성 (흡입) - 분류 4 피부 자극성 - 분류 2 눈 자극성 - 2A 호흡기 과민성 - 분류 1 피부 과민성 - 분류 1 발암성 - 분류 2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 (호흡기계 자극) - 분류 3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 - 분류 2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산	CAS: 5873-54-1	급성 독성 (흡입) - 분류 3 피부 자극성 - 분류 2 눈 자극성 - 2A 호흡기 과민성 - 분류 1 피부 과민성 - 분류 1 발암성 - 분류 2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 (호흡기계 자극) - 분류 3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 - 분류 2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산	CAS: 2536-05-2	급성 독성 (흡입) - 분류 3 피부 자극성 - 분류 2 눈 자극성 - 2A 호흡기 과민성 - 분류 1 피부 과민성 - 분류 1 발암성 - 분류 2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 (호흡기계 자극) - 분류 3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 - 분류 2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 분류 4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자료 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 없음.

다. 생물 농축성

제품/성분명	LogP _{ow}	BCF	잠재적 생물 농축성
4,4'-다이소시아산 디페닐 메탄	4.51	-	높음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산	4.51	-	높음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산	5.22	-	높음

라. 토양 이동성

토양/물 분배 계수(K_{oc}) : 자료 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가능한 폐기물 생성을 피하거나 최소로 할 것. 이 물질과 용액, 부산물은 언제나 그 지역의 환경보호법과 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이 나 쓰고 남은 제품은 허가된 폐기물 외주업자를 통하여 처리할 것. 폐기물은 해당 지역의 모든 관련 정부기관의 의무사항을 준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절대로 하수로 폐기되어서는 안됨. 사용된 포장용기는 재활용 되어야 함. 소각 또는 매립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함.

나. 폐기시 주의사항 : 제품 및 그 용기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세척되거나 행귀지지 않은 빈용기를 취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함. 빈 용기 또는 라이너에 제품 잔류물이 남아 있을 수 있음. 유출된 물질이 분산되거나 유수가 토양, 수로, 배수 및 하수와 접촉하는 것을 피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UN	IMDG	IATA
가. 유엔 번호	규제되지 않음.	Not regulated.	Not regulated.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	-
라. 용기등급	-	-	-
환경 유해성	해당없음.	No.	No.

제품 코드	00184962	작성일자	5/10/2023 (월/일/년)	버전	6
제품명	SIGMALINE 855 HARDENER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마. 해양 오염 물질	해당 없음.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추가 정보

UN : 확인된 바 없음.

IMDG : None identified.

IATA : 확인된 바 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사용자의 구역 내에서의 운반: 항상 밀폐 용기에 담아 똑바로 세워 안전하게 운반할 것. 사고가 발생하거나 누출되었을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품을 운반하는 사람에게 주지시킬 것.

IMO 협정에 따른 벌크 운송 : 해당 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 해당 없음
 (제조 등의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 해당 없음
 (제조 등의 허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유해약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다음 성분들은 작업노출기준이 있음:
 4,4'-디이소시아산 디페닐메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 메틸렌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11항(화학 :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 4,4'-디이소시아산 디페닐메탄
 물질 배출량조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 해당 없음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금지물질)

